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44호

붙임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

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날) ①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행사와 교육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추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

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지원

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영광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경제에너지과장, 노인가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3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청년활동 지원 및 권익증진

-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각종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군수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4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기반 및 환경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자산형성, 보건,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제18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보

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광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청년 정책 및 사업 홍보
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

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 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45호

붙임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광예술의전당의 운영·관리”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관리”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3조)제1호 중 ““예술의전당”이라 함은”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이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람권”이라 함은”을 ““관람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예술행사”라 함은”을 ““문화예술행사”란”으로,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사용자가 공연·연습·녹화·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 중 “영광예술의전당(이하“예술의전당”이라 한다)은 영광읍 천년로 13길”을 “문예의전당은 영광읍 천년로13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군수”이”를 ““군수””로, “변경 할”를 “변경할”로, “특별한”을 “별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이를”을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광군”을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단, 소공연장에 한함)”을 “(소공연장에 한정한다)”로 한다.

2.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순수문예 활동,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의전당시설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를 “문예의전당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술의전당시설 및 장비관리”를 “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후단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예술의전당시설 대관”을 “문예의전당 사용”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계법령 및 예술의전당의”를 “문예의전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시행규칙이나 지시를”을 “시행규칙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 하지”를 “납부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설종료”를 “사용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관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휴일(일요일 포함)”을 “공휴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가산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군수는 다음”으로,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광군이”를 “군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 전라남도, 영광군”을 “국가 및 전라남도 또는 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중·고등학교의”를 “초·중·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10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문예의전당 사용시 별도의 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철거 하고”를 “철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아니할”을 “않을”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는”을 “않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전시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은 총 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하며 관람료가 무료일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관람권 판매와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

⑤ 군에서 유료로 기획하는 공연이나 전시, 영화상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명예군민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 시설을”을 “문예의전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술의전당 시설을 망실·훼손한”을 “문예의전당 시설을 분실·훼손한”으로 한다.

제14조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세 미”를 “6세 미”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

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영광군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의”를 “문예의전당의”로, “영광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관장이”를 “그 밖에 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반수이상의”를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정하는바”를 “정하는 바”로 한다.

제19조의2,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행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자목 중 “영광예술의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

②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예술의 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

③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술의 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46호

붙임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군의 책무)”를“(군수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중전의 제6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후”를 “후 즉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8조) 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

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7조(중전의 제8조)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성별)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광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영광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부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을 “교부를 신청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을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로,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을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으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날”을 “다음날”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중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적용 기준

인구규모 (18세 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인구규모 (18세 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1만5천 미만	1/5	7만 이상 10만 미만	1/9
1만5천 이상 3만 미만	1/6	10만 이상 15만 미만	1/10
3만 이상 5만 미만	1/7	15만 이상 20만 미만	1/11
5만 이상 7만 미만	1/8	20만 이상 25만 미만	1/1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광군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영광군 및 읍·면(○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영광군 및 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left: 200px;">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47호

붙임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영은 한글전서체”를 “글자는 한글로 하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48호

붙임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25명”을 “7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5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회 과	직 기 속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7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6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3	16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6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49호

붙임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를 둔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S-전략산업실장

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나.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지원(성장동력사업 발굴 등)

다. 미래전략산업 총괄 대응

라. 신산업 동향 파악

마.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바.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 엑스포 행사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차. 엑스포 행사 국내외 관람객 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타.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3호의 타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버목까지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6호, 제19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4호)차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거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너목 중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를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러목을 거목으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인구늘리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라. 결혼·출산려 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마. 저출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청년일자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아. 도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일자리경제과장

가.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지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수출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시장 운영관리 및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노사정 추진 및 노동대책에 관한 사항

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정부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카.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타. 마을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파.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하. 투자유치 지원제도·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너.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제5조제2항제9호(종전의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인가정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1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제12호(종전의 제1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용·약용작물 및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제13호, 제17호 및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축산식품과장

가. 축산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나. 축산방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다. 축산식품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인 소득증대 컨설팅에 관한 사항

마. 농업법인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식품가공산업 육성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전통주 등 향토식품 자원화에 관한 사항

17. 도시교통과장

가. 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도시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마.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바. 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사. 운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아.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자. 주차 설치계획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

18. 환경과장

가.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마.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환경관리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②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교통과장

③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을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구교육정책과장

다. 축산식품과장

⑤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식품과장

⑥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원예축산”을 “축산식품”으로 한다.

⑦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가정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⑧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⑨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을 “인구교육정책과장”로,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⑩ 영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2조 중 “노인가정과장”을 각각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⑪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경제에너지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⑫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노인가정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⑬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특수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영광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이모빌리티산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⑮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이모빌리티산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노인가정과장”을 각각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⑪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노인가정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⑫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원예축산”을 “축산식품”으로 한다.

⑬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⑭ 영광군 지역사회보험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가정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⑮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경제에너지과장, 노인가정과장”을 “인구교육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⑯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을 각각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노인가정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⑱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노인가정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㉔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서식 중 “도시환경과”를 “환경과”로 한다.

㉕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㉖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㉗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소관부서란 중 “노인가정과”를 “가정행복과”로 한다.

㉘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노인가정과”를 “가정행복과”로 한다.

㉙ 영광군 포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경제에너지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㉚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나목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인구교육정책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마목 “이모빌리티산업과”를 “S-전략산업실”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사목 “노인가정과”를 “가정행복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다목 “경제에너지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자목 “도시환경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차목에 “환경과”를 신설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차목 “농업기술센터”를 카목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카목 “상하수도사업소”를 타목으로 한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50호

붙임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조례는 「평생교육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교육”을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법에”를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 지원)”을 “(경비 지원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2인”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의원 :”을 각각 “위원:”으로 하고, 제2호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를 “군수는 다음 각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때”를 “취소한 경우”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문해교육 실시 등)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기관·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51호

붙임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1부.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특성과 영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광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광군의회, 영광경찰서,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영광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영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영광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52호

붙임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1부.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읍·면민의 날) 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읍·면민의 날 기념식
2.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그 밖에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읍·면 이장단, 번영회 등 사회단체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제3조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제3조에 따른 행사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53호

붙임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재피해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6조를 제13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 중 “화재피해주민”을 “화재피해 주민”으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
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은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3. 피해지원금
4.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재피해주민”을 각각 “화재피해 주민”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3항 중 “지원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지원금액

은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을 “화재피해 주민이 부상”으로, “화재피해주민의”를 “화재피해주민의”로 한다.

-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2.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제10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지원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2조(지원금액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6조) 중 “화재피해주민”을 “화재피해 주민”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주거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

화재 발생 일시	
화재 발생 장소	
인 명 피 해	[]사망·실종,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시설 피해	총 면 적
	피해면적
	피해구분
	피해원인

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	보험회사		보장내용	
임시거처 현황	거처장소		거처방법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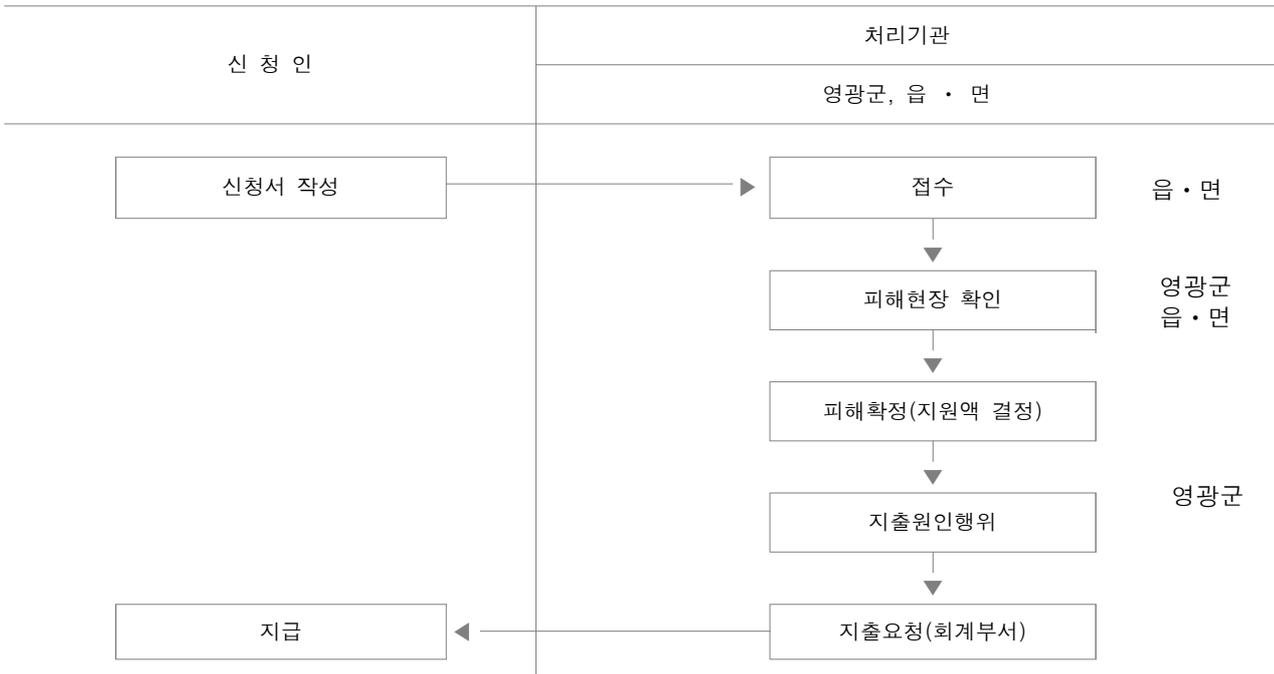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년 월 일</p> <p>성명: (서명 또는 인)</p>	<p>년 월 일</p> <p>성명: (서명 또는 인)</p>

영광군수 귀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주거형태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		
가 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중 학생수			

2. 화재피해 조사내용

화재 발생 일시			
화재 발생 장소			
인 명 피 해	사망·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시 설 피 해	①공부상면적	면적	m ²
	②소 실 면 적		m ² / %
	③피 해 금 액		원
	※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주 거 방 법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단위: 천원)

연번	지급일	지급대상	주 소	지급액	비고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54호

붙임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55호

붙임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를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비품일체”를 “비품전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56호

붙임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1부.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영광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제6

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57호

붙임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련시설을”을 “수련시설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할”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연회등 문화예술 행사”를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관련있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 하다고”를 “관련 있는 행사로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할”을 “사용할”로, “사람은”을 “사람 또는 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 ”군””를 “이하 ”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7조제1항제1호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로, “불가능 할”을 “불가능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상 될”을 “예상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보수하거나 증축 할”을 “개수·보수하거나 증축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 할”을 “인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에 대하여는”을 “사용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한 할”을 “제한할”로 한다.

1. 감염병환자

제8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훼손 하였”을 “훼손하였”으로 한다.

제9조 중 “제6조제1항”을 “군수는 제6조제1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관하는”을 “주최, 주관하는”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만65세”를 “만 65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3.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선정 하고자”를 “선정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훼손 하였”을 “훼손하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위탁 하거”를 “재위탁하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수 하여야”를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 하였”을 “위반하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단 될”을 “판단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 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수탁자는 제1항”으로, “비품일체”를 “비품 전부”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 중 “청소년 문화센터”를 “센터”로, “운영 하여야”를 “운영하여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청소년 문화센터”를 “센터”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1조와 관련)”을 “(제20조와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기준(제10조와 관련)

시 설	기 준 (1팀: 2명이상)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반(성인)	
멀티미디어실	1시간/팀	1,000	10,000	사용허가 시 설
노래음악실	1시간/팀	1,000	10,000	"
강 당	2시간/팀	3,000	30,000	"
다용도체험장	2시간/팀	2,000	20,000	"
댄스연습실	1시간/팀	1,000	10,000	"
스포츠놀이장	1시간/팀	무 료	10,000	"
동 아 리 방	1시간/팀	무 료	10,000	"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사용료(기준시간사용료/기준시간)를 적용한다.
- 청소년과 일반인(성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 사용료 경감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1팀으로 구성된 경우 경감 대상자 요금을 적용한다.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제20조와 관련)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

- 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나. 부상자 및 발병자에 대하여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안전사고, 응급환자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및 비상연락망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 라.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체험활동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 안전띠, 구명대 등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검사 기록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 청소년 문화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 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차. 사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카. 태풍, 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신청인	주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연락처)
	단체명	
내용	사용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박 일)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용료구분	[일반] [감면]
	변경신청내용	
용	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박 일)
	변경신청사유	
	사용요금	
	첨부	행사계획서 1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수 련 시 설 명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단 체 명		전 화	
내 용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료			
	감면 신청액			
	감 면 사 유			
<p>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서명, 인)</p> <p>영 광 군 수 귀 하</p>				
※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58호

붙임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영광군 체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계기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계기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전산업무 처리부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계기관리책임자는 부서 소속 공무원을 계기관리자로 지정하고, 계기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금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전자수입증지를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자는 일일 결산한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경우: 대금 입금일로부터 다음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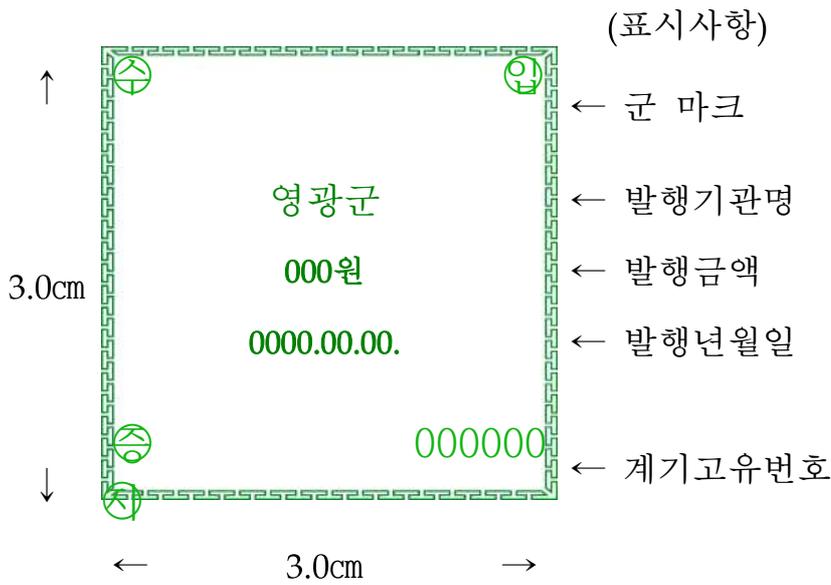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별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5조)



1.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고, 군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고시문(제4조제2항)

영광군 고시 제○○○○-○○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신규·변경·폐지) 고시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영광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신규·변경·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계기 발행기관명 : 영광군
2. 계기 발행장소 : 영광군 ○○○○실·과·소, 읍·면·동 민원실
3. 사용(신규·변경·폐지)일 : 년 월 일
4. 계기 고유번호 :
5. 계기 종류 :
6. 관리부서 및 책임자 :
7. 문 의 처 : 영광군 ○○○○(☎○○○○-○○○-○○○○)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계기 수입금 일일 결산 대장(제7조제1항)

계기 수입금 일일 결산 대장

결	주무관	팀 장	부서장
재			

20 년 월 일 (요일)

계기종별 구분	수 입 (A)		결 손 (B)		실수입 (C=A-B)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계						
현 금 결제						
신용카드 결제						
기 타 결제						

※ 증빙서류 붙이는 곳 : 계기 일일전표, 수입금 납입영수증, 결손 처리된 증지 등

붙임 : 계기 종별 인증 수입금 관리대장(출력물) 각 1부.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59호

붙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별표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60호

붙임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육상의 수하인에게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2. “수산경영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 외의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의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수산경영인 소득증대사업
2. 수산물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3.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4. 수산물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습득 사업
5.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6. 해양생태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금 한도) 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 가. 수산경영인: 3천만원 이하
 - 나. 생산자단체: 1억원 이하
2. 융자사업

가. 수산경영인: 5천만원 이하

나. 생산자단체: 3억원 이하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③ 군수는 용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용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금액과 운용 이자의 수익 금액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기금운용관: 해양수산과장
2. 기금출납원: 수산정책업무 담당 팀장

제10조(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경제에너지과장, 농업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2. 군수가 수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61호

붙임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수탁자 선정)”을“(관리위탁 선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위탁기간 갱신)”을“(관리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협의회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6항) 중 “농촌개발업무담당”을 “농촌개발팀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위원의 위촉 해제)”를“(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62호

붙임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지원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④ 영 별표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중 그 밖의 사업 종류(제5조제4항 관련)

사업구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비고
1. 소득증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비와 자재구입비 등 지원 (농기계, 영농자재, 저온저장고,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 설치) ·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토지, 건물 등 구입비용과 그 소요경비 지원 	
2. 복리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비와 의료보조기구 구입 지원 · 상하수도, 전기 및 전화 요금 등 공과금 지원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 지원 · 해충방제를 위한 가구별 약품 지원 · 마을회관·노인회관에 설치되는 운동기구, 안마 의자, 정수기 등 구입 또는 임대료 지원 · 재활용품 선별인력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3. 육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학교 강사료와 교재 등 소요경비 지원 	
4. 기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발전기금 조성 ·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63호

붙임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예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환 자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송 구 간	- (km)			
이 송 일 시	년 월 일			
신 청 금 액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영광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이송처치료 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및 통장사본
	<input type="checkbox"/>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input type="checkbox"/>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수조치 시 안내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64호

붙임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 1부.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에 대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암: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검사
2. 전립선암: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제3조(사업신청 및 선정) ① 암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검진비 지급 신청서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검진사업 대상자(이하 “검진 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암관리법」 등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제4조(검진방법) 암검진은 전문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수검한다.

제5조(검진비용 지원) 군수는 검진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암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암검진비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검진항목 []에 √ 표시	[]폐 암: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CT, Computed Tomography)검사 []전립선암: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검진기관				
검진일	년 월 일			
청구금액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 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진료비 계산서 사본 1부. 2. 진료비 세부내역서 사본 1부. 3. 검사 결과지 사본 1부. 4. 의사 소견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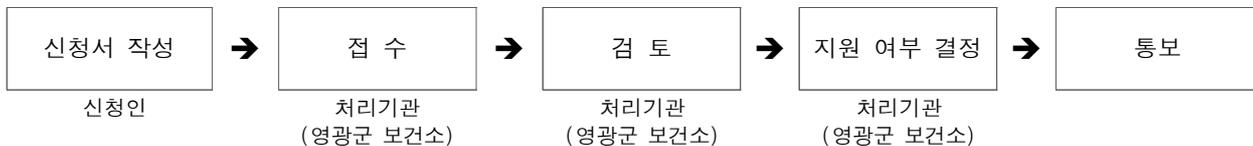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의결된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조례 제2865호

붙임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궁경부암

제3조제3호 중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를 “생후 36개월 이내의 영유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궁경부암: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사람(단, 과거 자궁경부암 접촉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규칙 제1373호

붙임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광예술의전당(이하 “예술의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취소하고자”를 “하고, 취소하고자”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취소”를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로, “제출하여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 허가”를 “사용허가”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올려야”를 “기록하여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를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로, “사용 목적과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을 “문예의전당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지서 발부”를 “통지”로,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발부”를 “고지서를 사용자에게 함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7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제7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로, “납부해야”를 “납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한 내”를 “납부기한 내”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6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로, “사용허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7호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중 “시설사용 취소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6호서식의”로, “제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을 “(관람권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팔고자”를 “판매하고자”로, “별지 제10호 서식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동시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신청서와 함께 관람권 또는 전산 예매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확인한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대장에 기록한다.

제11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 사용에 있어서”를 “문예의전당 사용 시”로, “예술의전당 구내에 설치 할”을 “문예의전당에 설치할”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따라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문화강좌 수강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을”을 “따른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군 본청의 분장사무의 문화관광과 제22호 및 제23호 중 “영광예술의 전당”을 각각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연락처	사무실			
	단체명		자 택			
			H·P			
성 명 (대표자)						
사용 목적 (행사명 등)						
기본 시설						
부대 시설 (첨부서식사용)		첨부와 같음				
사 용 기 간	20	사 용 회 수	오전	회	합	계
	~		오후	회		
	20 (일간)		야간	회		
사 용 료		금 원(₩)				
비 고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1호 - 첨부서식]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공 연 장 별		사용기준	사용료	사용횟수	금 액	비 고
총 계						
대공연장	분 장 실		1회 사용	20,000	회	
	냉.난방시설		시간당	현시가	시간	
	영사 시설	빔프로젝트	1회 사용	30,000	회	
		오케스트라피트	1회 사용	30,000	회	
	무대	승.하강무대	1회 사용	20,000	회	2014.12.30 삭제
		음향반사판	1회 사용	30,000	회	
	음향	기본음향	1회 사용	30,000	회	유선마이크 기본 3개 (추가 1개당 2,000원)
		무 선 마 이 크	1개/1회 사용	5,000	개 회	
	조명	기 본	1회 사용	30,000	회	
		팔로우핀 스포츠 라이트	1회 사용	20,000	회	
	피 아 노		1회 사용	50,000	회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별도 부담함
	소공연장	냉.난방시설		시간당	현시가	시간
빔프로젝트		1회 사용	10,000	회		
음 향		1회 사용	10,000	회		
조 명		1회 사용	20,000	회		
피 아 노		1회 사용	20,000	회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별도 부담함	
무대효과	드라이아이스 (재료별도)		시간당	10,000	시간	2014.12.30 삭제
	스모그기기 (재료별도)		1회 사용	10,000	회	
	스트로버		1회 사용	10,000	회	
	무빙라이트		1회 사용	10,000	회	2014.12.30 삭제
	판라이트		1회 사용	10,000	회	2014.12.30 삭제
전시설	냉.난방시설		시간당	현시가	시간	
기타시설	영화촬영		1회	50,000	회	
	중계 방송	TV(비디오녹화)	1회	30,000	회	
		라디오	1회	20,000	회	
	의상 및 대.소도구		1회	취득 가액의 5%	회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취소 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성명	
공연명 (전시·행사)			
사용일자		사용장소	
취소사유			
<p>상기와 같은 사유 때문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시설 사용을 취소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p>영 광 군 수 귀 하</p>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귀하

귀하(귀 단체)의 영광문화예술의전당 () 사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허가내용	기본시설 : 부대시설 :
공연·행사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일간)
공연·행사회수	회
사 용 료	금 원정(₩) (단, 부가가치세 별도) 기본 시설료 : ₩ 부대시설사용료 : ₩

20 . . .

영 광 군 수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 허가조건

1.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위 사용료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됩니다.
3.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합니다.
5. 사용기간 중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시설과 설비·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원상복구 해야 하며, 사용완료 시에는 사용전과 같이 정리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당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전당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 시 모든 사항은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사용료는 전당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시중 은행 등에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그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위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11. 본 문구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때는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	허 가 년월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자		사용료	비고
		년월일	시 간		주 소	성 명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승인서

신청인	단체명 (사용자)		전화번호	전화 : 휴대폰 :
	주소			
	대표자 성명			
공연명 (전시·행사)				
사용기간 및 시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			
감면 승인 내역				
총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사용료 감면 결정액	
<p>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영 광 군 수 (직인)</p>				

영광문화예술회관 관람권 확인대장

일련 번호	확인 일자	신청자	공연(행사)명	관람료 구분	확 인 내 역			확인자	결 계		
					구분	수량 (매)	금액 (원)		담당자	팀장	과장
					계			(인)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계			(인)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계			(인)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계			(인)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규칙 제1374호

붙임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질병관리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실·과장의 직급)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군 본청의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보건소의 분장사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사업소의 분장사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읍·면장의 직급)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특수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영광군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소관 중 “경제에너지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별표 1】

실·과장의 직급(제3조 관련)

실과장명	직급	비고
기획예산실장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S-전략산업실장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종합민원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인구교육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일자리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안전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가정행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스포츠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농업유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축산식품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산림공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해양수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도시교통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지방시설사무관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별표 2】

군 본청의 분장사무(제4조 관련)

실·과	분 장 사 무
기 획 예 산 실	1. 군정시책 종합기획·조정
	2. 우수시책 및 정책 개발과 중장기계획 수립
	3. 국내·외 연수 및 시찰을 통한 시책의 개발
	4.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특수사업의 추진상황 관리
	5. 공모사업 발굴
	6.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7. 각종 지시사항·건의사항 처리 및 관리
	8. 공약사항 처리 및 관리
	9. 군정시책 종합평가 및 심사분석
	10.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
	11. 외국 정부·지자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역발전 및 선도도시 연계·협력사업 관리
	13.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의 수립·관리 및 발전협의회 운영
	14.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역행복생활권 업무에 관한사항
	16. 정책연구용역 심사
	17. 예산의 편성·배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19. 각종 채권 및 채무, 기금 관리 및 운용
	20. 교부세 관리 및 경영수익사업 총괄
	21.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22. 군 행정 종합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보조
	23. 공무원 비위 예방 및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25.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처리
	26.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7. 군의회 운영지원
	28.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재의 요구
	29.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30. 법제행정 종합계획 및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31.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32.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33. 자치법규 정비 및 자치법규집 편찬
	34. 각종 통계 및 사회지표조사·관리
	35. 통계자료의 수집 및 발간
	36. 군정홍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7.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작성·제공 및 기록 보존
	38. 군정소식지·군보 등 홍보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9. 영상물 촬영·제작 및 장비 관리
	40. SNS 홍보 등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41. 소송 관련 각종 신청사건 처리
	42.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
	43. 행정절차제도 운영
	44.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45.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실·과	분 장 사 무
S - 전 산 업 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 3. 드론, 반도체, 바이오, 신소재,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식기반 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융·복합기술, 신산업, 생물산업 발굴 육성 6. 엑스포 개최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7. 엑스포 조직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8.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9.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및 유지·관리 10. 엑스포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11. 엑스포 기획보도 및 홈페이지·홍보채널 관리 12. 축제·박람회 등 홍보관 운영 13. 엑스포 학술행사(포럼, 컨퍼런스, 세미나 등) 기획 및 유치 14. 유관기관·단체 부대행사 유치 등 대외협력 추진 15. 엑스포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관리 16. 엑스포 개최 평가용역 보고서 등 발간 17.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 18.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19. 엑스포 행사장 기반시설 구축 및 환경 정비 20.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21. e-모빌리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22.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24. e-모빌리티 및 전기자동차 보급 25. e-모빌리티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관리 26. e-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 27. e-모빌리티 기업 역량 강화 28. e-모빌리티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도비 확보 29. e-모빌리티 관련 기관·단체(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관리 30.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관리 31. 육상풍력발전 관련 사업 육성 및 진흥 32. 석유, 가스, 연탄 등 에너지 판매업소 허가·등록·신고 및 안전관리 지도 33. 광공업 등록 및 육성 34. 전원개발 및 전화 보급, 전기사업의 인가·검사·승인 35.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6. 에너지 수급 관리

실·과	분 장 사 무
종합 민원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실 운영 및 민원서류 접수·분류·통제 2. 민원관련 제증명의 교부(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증명 등)의 발급·지도감독 3. 행정사업 지도감독 4. 창구민원 즉결처리 및 우편·전화·FAX민원 처리 5. 민원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6. 인감·주민등록업무 지도관리 및 여권발급 대행업무 7. 민원행정서비스현장제 추진 8.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9. 표준지공시지가 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공시 10.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11. 국토정보센터(조상땅 찾기) 운영 1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외국인 토지취득) 및 계약서 검인 13.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14. 부동산실명제 추진 15.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6.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관한 업무 17. 지적관리 기획조정업무, 지적측량검사 업무 18. 토지이동지 검사 및 등기촉탁신청의 처리 19. 지적기준점 관리 및 지적공사의 지도감독 20.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관리 21.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운영 22.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3. 행정 및 공공분야 공간정보 관리운영 24.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25.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추진 26.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제외) 및 준공에 관한 사항 27. 공중·식품위생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8.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9.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0. 오·폐수, 폐기물 배출시설 등 환경분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1. 산지전용허가(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 3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 33. 공동주택에 관한 사무 34. 불법 건축물 단속 35.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36. 국민주택건설사업 및 자금 지원관리 37.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융자금에 관한 업무 38. 수해주택조사 및 지원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39.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40. 건축관련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지도관리 41. 한옥마을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공공기반시설 제외)

실·과	분 장 사 무
인 구 교 육 정 책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늘리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 사업 4. 인구 감소지역 활성화 관련 각종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5. 저출산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사항 7.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8.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9. 청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0. 청년 인력양성 및 문화·복지 사업 추진상황 관리 및 지원 11.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12.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3. 남도학숙 및 전남학숙 운영 지원 14. 인재육성기금 및 명문교육성사업 15. 학교 교육지원 사업 16. 군민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 17. 여성자치대학 운영 18. 군립 및 작은 도서관 운영

실·과	분 장 사 무
일 자 리 경 제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사후 관리 2.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공장등록 3. 입주업체 원스톱 행정지원 및 관리 4.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운영 및 지원 5.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매대책 6.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7.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 8. 노동정책 및 고용촉진과 실업대책 9. 일자리 창출업무 총괄 추진 10. 고용촉진훈련 및 실업대책 추진 1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12. 유관기관 일자리 종합관리 및 협력사업 추진 13.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14.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15.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16. 마을공동체사업 총괄진단·분석 17.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18. 시장 계량관리 및 사용료 징수 19.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20. 담배, 통신, 방문, 복권 판매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 21. 공산품 품질 관리 및 지적재산권 출원 22.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 및 관리대상품목 요금 실태조사 23. 수출업체 육성 및 관리감독 24. 공산품 판매촉진·수출 진흥 및 상품 마케팅 지원 25.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26.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 운영 27.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28. 투자기업 사후관리제도 운영 29.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 총괄 및 조정 30. 투자유치 총력추진제도 운영 31. 투자유치 정보 및 자료수집, 투자환경 분석 32.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프로젝트 개발 33. 투자유치관련 법규 및 제도 운영 34. 투자기업 상담 및 고충처리

실·과	분 장 사 무
문화관광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2.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업체 등록·지도 3. 지역축제 발굴·육성 및 지원 4. 군 축제 운영·지원, 읍·면 축제 지도·감독 5. 문화관광해설가 관리지도 6. 관광개발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7. 관광이용시설의 설치·개발 8. 관광자원의 개발·관리 9. 관광지 홍보시설 설치 유지 관리 10. 백수해안도로 시설물 및 노을전시관 관리 11. 불갑사지구 관광지 및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및 숲쟁이 꽃동산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12. 문화예술 진흥 및 관련산업 육성 13. 지방문화원 육성 및 운영 지도·감독 14.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및 행사 주관 15.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감독 16.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 공연장 및 종합게임장 지도감독 17. 군지발전 및 향토자료 수집 조사 18. 문화재 보호관리 및 문화재 발굴 19. 전통사찰 관리에 관한 사항 20. 문화재 보호관리 및 문화재 발굴에 관한 사항 21. 영광예술의전당 관리 전반 22. 영광예술의전당 프로그램 운영 전반 23. 영광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24. 전수교육관 건립 및 관리 25.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실 · 과	분 장 사 무
안전관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정책 총괄 조정 2. 안전지수, 안전지도 관리 3. 사회안전 총괄관리 4. 산단, 원전 등 특수안전 총괄관리 5. 특별사법경찰 지원업무 6. 국가기반보호체계에 관한 사항 7.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 8.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9. 인적·자연재난 관련 업무 총괄 10.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관리 11. 영광기상관측소 관리 운영 12. 유·도선장 관리 13. 재해복구사업계획 수립 시행 및 재난복구 지원금 지급 14.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15.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유지관리 16. 풍수해 보험관련 업무 17.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총괄 18. 원전관련 일반 업무 전반 및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19. 원전 건설관련 각종 민원사항 협의 조정 20. 원전관련 행정협의회 운영 및 주민보호대책 21. 원전방사능 방지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 22. 국가비상사태 위기관리 23.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24. 비상대비 업무 조정 25. 우수저류시설 설치 업무 26. 이재민 구호사업 27. 소하천 정비 및 관리 28. 하천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2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30.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실·과	분 장 사 무
사 회 복 지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조정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 현충시설물 관리 및 보존업무 4. 의료급여 지원 및 수급자 사례관리 5.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6. 사회복지 시책평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지도 7. 사회서비스 마우처 지원 (가사간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8.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사후관리 9.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급여, 서비스, 단체지원 등) 및 장애인시설 지원 10. 장애인복지타운 운영 11. 주거급여 지원 1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13. 행려자(노숙자, 부랑인 등) 지원 14. 긴급지원 업무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관리 16. 자활기금 관리 17. 차상위계층 지원 및 관리 18.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생활안정자금·생업자금 관리 19.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통합사례관리, 지역보호체계, 무한돌봄) 20. 기부문화 활성화 및 민간 후원금품 배분

실·과	분 장 사 무
가정 행복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령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지원 및 경로효친 사상 앙양 3. 노인 사회활동 지원 및 저소득층 노인 관리 4. 공·사설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 운영 관리 5. 무연고 행려 사망자 처리 및 장사 등에 관한 업무 6. 여성가족 정책수립 추진 7.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발전기금 관리 8. 건전가정 육성 및 미혼모 발생 예방 9. 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 및 여성복지시설 지원 관리감독 10. 청소년복지증진 및 건전 청소년 육성 11. 어린이 놀이터 유지 관리(공원시설 외) 12. 다문화 가정 및 이주여성 지원 13. 아동복지 지원 및 건전 육성

실·과	분 장 사 무
재 무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부과 징수 2. 지방세에 따른 국세 및 위탁국세 부과 3.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결정, 질의 회시 4. 지방세 세무조사 5. 과세시가표준액 조사 결정 및 지방세표 작성 6. 지방세 체납관리 및 정리 7. 세출예산 집행 및 세입·세출 결산 8.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9. 공사 용역·구매·제조·임차 계약 10. 관급자재 조달 및 수급 1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불입 12. 공무원 기여금 징수 불입 13.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지출계산서 및 출납계산서 정산 심사 14. 각종 기금 결산 총괄 및 세외수입 총괄 15. 공용차량 유지관리 16. 수입증지 관리 17.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관리 18. 보조금 정리 및 자금배정 19. 군 금고 계약, 자금 관리 지도 감독 20.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21. 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처분 22. 은닉재산 발굴 및 권리 보전, 소유권확보 23. 공유재산 소송업무(임야 제외) 24. 청·관사 관리 및 운영(소방, 전기, 기계) 25. 복지회관 건립 및 관리 26. 물품수급계획 수립 정수 책정 및 재물조사 27. 물품 출납 보관 및 처분 28.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29. 주택 시가조사 및 건물현황과 주변 특성조사 30. 개별 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개별 통지 31. 세외수입 일반회계 및 체납액 징수 추진 32. 진내지구 공유수면(범성항) 분양 33.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 34. 고향사랑e음 시스템 관리 및 운영 35. 답례품 발굴 및 공급업체 유통관리

실·과	분 장 사 무
스 포 츠 산 업 과	1. 체육정책·진흥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지원·관리
	3. 국내·국제경기 등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지원 및 관리
	4.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5. 체육생활 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6. 레저산업 육성 및 종합계획 수립
	7. 학교체육시설 확충 등 학교체육 지원 및 육성
	8.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
	9.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마케팅 전략 수립
	10. 스포츠산업 활성화 종합기획
	11.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스포츠이벤트 개최
	12.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13. 체육공원조성 및 시설물 관리
	14.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처리
	15. 영광스포티움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 전반
	1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실·과	분 장 사 무
농업유통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정업무 총괄 및 기획 조정 2. 농지의 보전 및 이용 3. 농어민 자녀학자금·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및 주민소득지원 운영 관리 4. 농기계 지원사업 5. 고품질 쌀 생산대책 및 식량 수급계획 수립 6.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7. 기본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추진 8. 친환경 농업단지·지구 조성 9. 농업·농촌 및 농산업 발전계획 수립 10.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11.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12. 농업인단체 육성 13.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14. 농업발전협의회 및 정책위원회 운영 15. 농업발전기금 관리·운영 16.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 17. 사회적농업 육성 18. 농업정책보험 19. 특용작물 및 시설원예작물 생산 장려 20. 원예특작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지원 21. 원예특작 보조금 지원사업 22. 친환경학교급식, 초·중·고 무상급식, 서울시 공공급식 등 계획 수립 시행 23. 정부양곡 수매·보관, 부산물 및 포장재 관리 24.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 25. 농·축산물 직거래행사 추진 26. 영광 쌀 판매촉진 및 고정고객 확보사업 27. 농특산물산지 유통종합계획 수립 28. 농산물 유통산업 육성 기획 총괄 29. 산지유통시설 지원(지게차 및 저온저장고 포함) 30. 미곡종합처리장(정부 및 개인 RPC)에 관한 사항 31.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수도권 농축수산물 종합물류센터 추진 33.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 34. 농특산물 품질인증사업 35. 남도미향 브랜드 육성사업 36. 정부양곡의 보관·재고조사·가공·수송 관리 37.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 및 상표관리 38.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리 39. 지역단위 푸드플랜(Food Plan) 수립 및 시행

실·과	분 장 사 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경쟁력 제고사업(한우, 젓소, 돼지, 닭, 기타 가축) 2. 가축 법정전염병 예방 및 방역 3.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사업 4. 부정 축산물 지도 단속 및 축산물 브랜드 육성 5. 축산물 유통, 가공, 운반, 보관, 판매, 인·허가 6.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7.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8.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 융복합 사업 9.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 환경 조성 10. 말산업 종합계획 추진 11. 조사료 생산 및 품질강화 추진
축산식품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한우산업 육성 13. 축산재해 14. 축산 약취개선 사업 15. 축산업 허가, 등록제 추진 16. 반려동물 지원 17. 동물보호법 관련 지도·단속 18. 농식품사업 추진 총괄 19. 향토 및 농산물 식품산업 등 가공산업 육성 개발 운영 20. 영광보리산업특구 육성 21. 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22. 농촌민박 지정 및 관리 23. 농업법인 및 경영·공동체 육성 관리

실·과	분 장 사 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기본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2. 육림사업 및 입목 벌채 3. 조림계획 및 시행 4. 사방사업계획 및 시행 5. 산림보호구역 관리 6. 산림용 묘목 및 종자관리, 종묘, 판매업 등록 7. 산림기본통계 8.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 9.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사항 10. 산촌 생태마을 조성 운영 11. 산림보호단속 12. 임산물 가공업 지도 및 단속 13. 산림내 형질변경 사후관리 및 지도단속 15. 임도시설
산림공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산림 병해충 방제 17. 국토공원화 사업 18. 꽃길조성 등 가로변 공원화사업 19.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20. 경관관리계획·공원관리계획 수립 21. 완충녹지 점용허가 등 22. 영광테마식물원 운영관리 23. 영광승마장 운영관리 24. 불갑산 도립공원 운영관리 25. 영광 물무산 행복숲 조성 및 운영 26. 숲해설, 산림치유, 산림교육업무 추진 27. 정원산업화 28.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관리 29. 영광산림박물관 운영관리 30.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

실·과	분 장 사 무
해양수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수산 업무의 기획 조정 2.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3. 수산진흥사업 육성 및 도서개발종합계획 수립·추진 4. 국가·지방,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및 관리 5.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6. 해양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 7. 수산물 수급 및 생산계획 수립 8.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어업면허 처분 9. 어업권조사 및 행정처분 10. 유료 낚시터 지정 및 낚시어선 어업허가(신고) 11. 수산증양식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12. 수산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13. 어업허가(연안, 구획, 육상, 양식, 특정어구 등)총괄 14. 어선등록 및 미등록 어선관리 15. 어선건조, 개조발주허가 및 어선검사에 관한 사항 16. 수산자원조성 종합계획 수립 17. 수산종묘 생산 및 종묘 배양장 시설 관리 18.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사업 및 사후관리 추진, 브랜드화사업 및 상표관리 19. 굴비명품화 사업 20.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지도 21.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 22. 해양자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3.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24. 적조대책 및 피해복구 25. 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면허에 관한 사항 27.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청정해역 관리 28. 해양오염원 조사 및 오염행위 단속 29.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 30.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및 여객선 운항관련 업무 31. 수산물 직거래 등 유통업무 추진 32. 천일염 특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33. 천일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구축 34. 염전관리 전반(군유염전 포함) 35. 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6. 해수욕장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귀어 귀촌에 관한 사항 38. 해상풍력에 관한 사항

실·과	분 장 사 무
<p>건설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 2. 군 건설종합계획 수립·추진 3. 도로 교통량 조사 4.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5.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영광읍) 6. 도로 점·사용 허가 7. 골재채취허가 및 관리(육상골재) 8. 주민편익사업 추진 및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9. 전원개발 등 도시민 유치관련 사업 추진 1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 1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 조사·측량·시공·감독 12.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13. 도로정비관리(도시계획 외) 및 가로 지장물 단속 14.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 15. 부실공사 신고센터 16. 도로표지판 정비 및 유지관리 17. 주요간선도로(2차로 이상) 제설작업 18. 교량시설물(3종, 연장20m이상) 유지·관리 및 보수 19. 군도·농어촌도로정비 기본 계획 수립 20. 지역개발사업[(구)개발촉진지구] 추진 21. 접도구역관리 22. 농업용수 개발 및 보수 23. 지하수개발 및 관리 24. 경지정리사업 및 농지개량사업 추진 25. 관개시설 개·보수 및 지하수 개발 허가·신고 관리 26. 한해장비 유지관리 및 정비 27.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및 방조제 관리 28. 소규모 개간허가 및 지도관리 29. 전문건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 30. 가로등 시설·보수에 관한 사항 31.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실·과	분 장 사 무
도시교통과	1. 군 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변경
	2. 제1·2종지구단위 시설결정
	3.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검토회신 업무
	5.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옥외광고물 허가 포함)
	7.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8.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업무
	9. 군계획시설사업 추진
	10.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정비
	11. 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 등 시설분야)
	12. 권역단위(생활권) 종합정비(농산어촌)사업
	13.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및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
	14.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5.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인가
	16. 자동차 운송사업체 종합 지도·감독
	17. 자동차 등록, 임시 운행허가
	18. 자동차 운행단속과 행정처분
	19. 공용(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업무(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
	20. 자동차관련 특별사법 업무
	2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과	분 장 사 무
환 경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3. 환경보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5.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대응 업무 7. 탄소중립 대응 업무 8.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9.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진동)가동신고 및 지도·점검 10. 분뇨관련영업 지도·점검 1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12.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13. 생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생활 폐기물 업무 총괄 15.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수립·시행 16. 공중화장실 관리 17. 자연정화활동(자연보호)의 추진 및 지도단속 18. 환경 실무원 관리

실·과	분 장 사 무
총 무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사무 관리 및 개선대책 2. 각종 선거 및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 3. 국내 자매도시 결연 운영 4. 행정동우회 지원 관리 5. 행정 지도 및 이·반장 관리, 반상회 운영, 적십자회비 수납 등 6.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총괄 7. 문서수발, 기록물관리 및 공인 관리 8. 군민의 날, 월례조회, 중·시무식 등 행사 및 의전 총괄 9.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사무 10.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11. 적극행정 업무 12. 조직업무, 공무원 정원 및 인사관리 13. 그밖에 다른 실과·담당에 속하지 않은 업무조정 및 배분 14. 공무원 교육 운영 및 복무 관리 15. 공무원 보수 및·공무원연금·행정공제회비에 관한 사항 16. 4대보험 관리 17.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업무 총괄 18. 공무원 후생복지 및 노조지원 19.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 20. 지방분권·이양업무 추진 21. 군민과 대화 및 소통업무에 관한 사항 22. 군민과 소통 시책업무 추진 23. 직소민원처리 및 업무관리 24. 민주평통 및 국내·외 향우회 관리 25.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및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26. 새마을운동조직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지원 27. 정부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관리 28. 정부혁신 대응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29.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행 30. 정보화 교육 및 전산시설의 운영·유지관리 31. 정보통신 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32. 행정전화 통신망관리 및 전자교환기 운영관리 33. 회의실 방송장비(영상회의실 포함) 운영 및 유지보수

【별표 3】

보건소의 분장사무(제5조 2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보 건 소 보건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예산, 복무·시설·물품 운영 및 관리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4. 영광군공립요양병원 관리 5. 헌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보건기관 진료에 관한 사항 7. 보건 관련 민원처리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법정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 구축 등 관리 10.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예방교육,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매개체 방역관리 13. 감염병 비상발생시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14.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대응 업무 15. 기후변화 적응 건강대책에 관한 사항 16. 생물테러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7. 국가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8.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가 결핵관리사업 20.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 관리 21. 한센병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22.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3. 방역소독 및 소독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25.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관한 사항 26.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등에 관한 사항 2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8. 진단용 방사선장비 및 특수장비 등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9.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30. 건강검진 등 신고 민원 처리 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보 건 소 건강증진과	1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증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5 구강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6 금연 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7 흡연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8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지정에 관한 사항
	9 영양플러스 사업
	10 갱년기 상담 및 진료에 관한 사항
	11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2 모자보건 사업
	13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 관리사업
	14 국가 암 건강검진 및 노인 안검진에 관한 사항
	15 치매 조기검진사업
	16 치매예방 및 환자 관리사업
	17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18 치매예방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19 지역사회 건강조사
	20 행복드림버스 운영
	2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2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3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24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5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6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7 기초정신건강심사운영 지원
	28 기타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29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구 분	분 장 사 무
보건진료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료행위에 의약품의 투여 7. 예방접종사업 8.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9.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10.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사업소의 분장사무(제9조 관련)

실·과·소	분 장 사 무
상하수도사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하수도의 설치·보수·유지관리 등 제반업무 2. 생활용수의 개발 및 마을상수도 관리 3. 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4.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6.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우수저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10.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

【별표 7】

읍·면장의 직급(제10조 관련)

읍면장명	직	급	비고
영광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백수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홍농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대마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묘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불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군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군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염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법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낙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규칙 제1375호

붙임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규칙 제1376호

붙임 영광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영광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영광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규칙 제1377호

붙임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1부.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가정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장
2.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영광군 1388청소년지원단의 장
4. 영광군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6. 영광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지역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과장
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9. 지역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10. 지역 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 사전협의 등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계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영 광 군 수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 규칙 제1378호

붙임 영광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1부.

영광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 기준 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신고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식품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다.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한 특정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건물은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하며,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가공은 하지 않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2) 작업장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할때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4)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5)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6)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 및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

- 1)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각종 행사 시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4)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4)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5)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열탕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6)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7)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2월 31일

영 광 군 수 강 조 

영광군 훈령 제438호

붙임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부. 끝.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1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영광군 인구영향평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을 “인구교육정책과장” 으로 한다.

②영광군건설공사종합추진기획단설치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과장” 을 “일자리경제과장” 으로 한다.

③영광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경제에너지과장” 을 “일자리경제과장” 으로 한다.

④영광군 도서자가발전소 세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에너지과” 를 “일자리경제과” 로 한다.

⑤영광군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과장” 을 “일자리경제과장” 으로 한다.

⑥영광군 지역방호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에너지과장” 을 “일자리경제과장” 으로 한다.

⑦영광군농축수산물생산조정협의회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원예축산과장” 을 “축산식품과장” 으로 한다.

⑧영광군 민원사무 전결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별표 중 “노인가정과” 를 “가정행복과” 로, “환경녹지과” 를 “산림공원과, 환경과” 로, “농정과” 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로, “투자경제과” 를 “일자리경제과, 도시교통과” 로, “건설도시과” 를 “건설과” 로 한다.

⑨영광군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중 “노인가정과장” 을 “가정행복과장” 으로 한다.

⑩영광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규정 제2조 중 별표 3의 “노인가정과” 를 “가정행복과” 로, “투자경제과” 를 “일자리경제과” 로, “농정과” 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로, “환경녹지과” 를 “산림공원과, 환경과” 로, “건설과” 를 “건설과, 도시교통과” 로 한다.

영광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영광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업무에 종사하는**”을 “**업무 및 사업장 및 관광지 등 내·외부 청소·정비·위생업무를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장제3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대기발령)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그 사유가 소멸 되면 지체 없이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3. 채용비리, 금품비위, 성범죄, 직장내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로 내·외부 조사·감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

② **군수는 대기발령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3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한다.**

1.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 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기간 중 감봉금액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감봉총액은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는 근로관계의 종결을 의미한다. 다만 해고처분 대상자에게는 30일 간의 유예기간(사전예고)을 부여한 후 해고한다.

②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공무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간 표창을 금지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광군 공무원 직종별 정원표

(단위 : 명)

부 서 별	계	행정공무직		기술공무직							청원경찰
		행정사무원	계	시설 관리원	전문 사무원	복지 사무원	보건 사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실무원		
합	계	301	130	142	19	8	24	29	6	56	29
관 청	소 계	167	100	53	2	8	18		6	18	15
	기 획 예 산 실	3	3	0							
	S-전략산업실	3	3	0							
	종 합 민 원 실	9	8	0							1
	인구교육정책과	5	4	0							1
	일자리경제과	6	6	0							
	문 화 관 광 과	11	7	1	1						3
	안 전 관 리 과	19	18	0							1
	사 회 복 지 과	6	2	4			4				
	가 정 행 복 과	23	9	14			14				
	재 무 과	8	7	1						1	
	스 포 츠 산 업 과	9	2	5		5					2
	농 업 유 통 과	3	3	0							
	축 산 식 품 과	1	1	0							
	산 림 공 원 과	13	9	3		3					1
	해 양 수 산 과	5	4	0							1
	건 설 과	9	1	7	1				6		1
	도 시 교 통 과	6	5	0							1
	환 경 과	19	1	17						17	1
	총 무 과	9	7	0							2
직 기 소 관	소 계	56	14	41	12	0	0	29	0	0	1
	보 건 소	32	2	29				29			1
	농업기술센터	24	12	12	12						
사업소	소 계	17	0	5	5	0	0	0	0	0	12
	상하수도사업소	17		5	5						12
의 회	소 계	6	5	0	0	0	0	0	0	0	1
	의 회 사 무 과	6	5	0							1
면	소 계	55	11	44	0	0	6	0	0	38	0
	영 광 읍	23	3	20			1			19	
	백 수 읍	3		3			1			2	
	홍 농 읍	9	3	6			1			5	
	대 마 면	1		1						1	
	묘 량 면	2	1	1						1	
	불 갑 면	1		1						1	
	군 서 면	1		1						1	
	군 남 면	3	1	2			1			1	
	영 산 면	5	2	3			1			2	
	법 성 면	7	1	6			1			5	
	낙 월 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근로자의 직종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행정사무원 : 비서 및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u>업무에 종사하는 사람</u></p> <p>2. <u>사업장 관리원 : 사업장 및 관광지 등 내·외부 청소·정비·위생 등 주로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u></p> <p>3. ~ 9.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① (생략) <u><신설></u></p>	<p>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 ----- -----.</p> <p>1. ----- ----- ----- <u>업무 및 사업장 및 관광지 등 내·외부 청소·정비·위생업무를 수행하는</u> -----</p> <p><u><삭제></u></p> <p>2. ~ 8.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29조의2(대기발령) 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u></p> <p>1. <u>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이</u></p>

제36조(연장근로) ① (생략)

제64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한다. ①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 처분을 받
은 사람의 처분기간 중 감봉금액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
의1을, 감봉총액은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
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
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

요구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3. 채용비리, 금품비위, 성범죄, 직장내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로 내·외부 조사·감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

② 군수는 대기발령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36조(연장근로)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4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
한다.

1.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 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기간 중 감봉금액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1을, 감봉총액은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

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고는 근로관계의 종결을 의미한다. 다만 해고처분 대상자에게는 30일 간의 유예기간(사전예고)을 부여한 후 해고한다.

⑤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공무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⑥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간 표창을 금지한다.

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는 근로관계의 종결을 의미한다. 다만 해고처분 대상자에게는 30일 간의 유예기간(사전예고)을 부여한 후 해고한다.

②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공무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간 표창을 금지한다.

[별표 1]

영광군 공무원 직종별 정원표

(단위 : 명)

부 서 별	계	행정공무원			기술공무원							정원 경합
		계	행정 사무원	사업장 관리원	계	시설 관리원	전문 사무원	복지 사무원	보건 사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실무원	
합 계	299	130	109	21	142	19	8	24	29	6	56	27
소 계	170	100	86	14	55	2	8	20		6	19	15
기획예산실	3	3	3									
인구일자리 정책실	4	4	4									
중흥민원실	9	8	8									1
문화관광과	15	10	5	5	1	1						4
총 무 과	9	7	7									2
안전관리과	25	23	23									2
경제에너지 과	3	3	3									
이도물에너지 산업과	3	3	2	1								
시정복지과	8	2	2		6		6					
노인아로과	23	9	9		14		14					
재 무 과	8	7	5	2	1						1	
스포츠산업과	9	2	2		5		5					2
농업유통과	3	3	3									
원예축산과	1	1	1									
신원공원과	13	9	4	5	3		3					1
해양수산과	5	4	3	1								1
건설과	9	1	1		7	1				6		1
도시환경과	20	1	1		18						18	1
소 계	56	14	13	1	41	12			29			1
보건소	32	2	2		29				29			1
농업기술 센터	24	12	11	1	12	12						
소 계	15				5	5						10
상하수도 사업소	15				5	5						10
소 계	6	5	4	1								1
의회사무 과	6	5	4	1								1
소 계	52	11	6	5	41		4				37	
영광읍	20	3	2	1	17		1				16	
백수읍	2				2						2	
홍농읍	8	3	2	1	5						5	
대마면	2				2						2	
묘량면	2	1		1	1						1	
불갑면	1				1						1	
근서면	1				1						1	
근남면	4	1		1	3		1				2	
명산면	5	2	1	1	3		1				2	
법성면	7	1	1		6		1				5	
노월면												

[별표 1]

영광군 공무원 직종별 정원표

(단위 : 명)

부 서 별	계	행정공무원			기술공무원							정원 경합
		계	행정 사무원	시설 관리원	전문 사무원	복지 사무원	보건 사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실무원			
합 계	301	130	142	19	8	24	29	6	56	29		
소 계	167	100	53	2	8	18		6	18	15		
기획예산실	3	3	0									
5-전략 산업실	3	3	0									
종합민원실	9	8	0							1		
인공교육 과	5	4	0							1		
영민자 리과	6	6	0									
문화관광과	11	7	1	1						3		
안전관리과	19	18	0							1		
사회복지과	6	2	4		4							
가정행복과	23	9	14			14						
재 무 과	8	7	1							1		
스포츠 산업과	9	2	5		5					2		
농업유통과	3	3	0									
축산식품과	1	1	0									
신원공원과	13	9	3		3					1		
해양수산과	5	4	0							1		
건설과	9	1	7	1				6		1		
도시교통과	6	5	0							1		
환경과	19	1	17							17		
총 무 과	9	7	0							2		
소 계	56	14	41	12	0	0	29	0	0	1		
보건소	32	2	29				29			1		
농업기술 센터	24	12	12	12								
소 계	17	0	5	5	0	0	0	0	0	12		
상하수도사 사업소	17		5	5						12		
소 계	6	5	0	0	0	0	0	0	0	1		
의회사무과	6	5	0							1		
소 계	55	11	44	0	0	6	0	0	38	0		
영광읍	23	3	20			1			19			
백수읍	3		3			1			2			
홍농읍	9	3	6			1			5			
대마면	1		1						1			
묘량면	2	1	1						1			
불갑면	1		1						1			
근서면	1		1						1			
근남면	3	1	2			1			1			
명산면	5	2	3			1			2			
법성면	7	1	6			1			5			
노월면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2월 30일

영광군의회 의장

강 필



영광군의회 훈령 제11호

붙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영광군의회 사무전결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중 “담당” 을 각각 “팀장” 으로 한다.

별표 중 “담당(팀장)” 을 “팀장” 으로 한다.

[별표]

의회사무과에 두는 팀장별 분장사무 (제3조 관련)

부서별	팀 장	분 장 사 무
의회사무과	의 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청사 및 물품 관리 3.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호봉 승급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6. 공무원 근무성적 및 성과상여금 업무 7. 인사위원회 운영 8. 공무원 직무역량 및 소양교육 9.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운영 10. 공무원의 복무 관리 11.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12. 일반서무 및 관인관리 13. 의장 보좌 및 수행에 관한 사항 14. 의정연수 및 직무계획 수립 15. 의원 및 직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6. 방송영상 관리 및 촬영 17. 의원등록 및 신분 관리 18. 의회차량 운행 및 관리 19. 의장, 부의장 사무실 관리 20. 의원사무실 업무지원 21. 그밖에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의 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조정 운영 2.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3.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결문서 이송 및 보존 관리 5. 본회의장 의정방송 및 방송시설 운영 지원 6. 의안 접수 및 처리(대장관리) 7.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회의록 녹음 및 속기·작성에 관한 사항 9. 회의록 발간, 보관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청원·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1.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의정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정활동 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2. 의회안내책자, 의회소식지 등 각종 간행물 발간 3. 의장 인사말씀, 축간사 및 인터뷰 자료 작성 4. 의회 의정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 5.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6. 찾아가는 의회 및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등 7.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의정 교육자료 작성 8.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9. 의정활동 및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10. 그밖에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